

#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7. 14(월)
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7. 2.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14. 7. 2.

라. 상정일자 : 2014. 7. 10(제21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)

- 제안설명 : 행정관리국장 박송철
- 검토보고 : 교육수석전문위원 한상환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에 따른 정책추진·역점사업·주요사회 이슈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목적달성을 위한 보좌기능 강화

### 나. 개정근거

-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(정원의 관리) 및 제16조(별정직공무원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

#### 다. 주요내용

- 교육감 비서실에 별정직공무원을 배치함에 따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별정직란을 신설함.(안 별표 3)

### 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은 2014.7.1.일자로 취임한 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 중 별정직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.

#### ○ 주요검토내용

- 안 제4조 제1항 단위기관별 정원표(별표3)에 “별정직”란을 신설하여 제3조 제1항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(별정직·정무직 0.1%≒3.089명 이내)에 부합하는 2명을 5급 상당 이하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- 다만, 비서관 또는 비서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(대통령령)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시 함께 면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, 임용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인사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의) 교육감 비서실에 별정직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비서실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 비서도 정책결정에 관여하는지

(답변) 교육감 비서 증원은 교육감 보좌와 소통을 위해서임

#### 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최용덕, 박종우, 이강호, 구재용, 박승희, 이영환, 제갈원영 위원  
나. 반대 : 없음

#### 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##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## 8. 기타사항

○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	3,276				
정무직 소계		1				
교육감		1		1		
일반직 소계		3,085				
	3급	7		7		
	4급	26	1	21	4	
	5급 이하	3,045				
	전문경력관	7				
연구직 소계		2				
연구사		2				
별정직 소계		2				
5급 상당 이하 소계		2				
특정직 소계		186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	27		18	9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	159		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직급별 \ 기관별</th> <th>총계</th> <th>시의회 사무처</th> <th>분청 (직속기 관포함)</th> <th>교육지원 청</th> <th>공립의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총계</b></td> <td><b>3,276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정무직 소계</b></td> <td><b>1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일반직 소계</b></td> <td><b>3,087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3급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4급</td> <td>26</td> <td>1</td> <td>21</td> <td>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5급 이하</td> <td>3,04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전문경력관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연구직 소계</b></td> <td><b>2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연구사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특정직 소계</b></td> <td><b>186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일반직 4급 상당 이상   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 <td>27</td> <td></td> <td>18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일반직 5급 상당 이하   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   학사·교육연구사</td> <td>15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분청 (직속기 관포함)	교육지원 청	공립의 각급학교	<b>총계</b>	<b>3,276</b>					<b>정무직 소계</b>	<b>1</b>					교육감	1		1			<b>일반직 소계</b>	<b>3,087</b>					3급	7		7			4급	26	1	21	4		5급 이하	3,047					전문경력관	7					<b>연구직 소계</b>	<b>2</b>					연구사	2					<b>특정직 소계</b>	<b>186</b>		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 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	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직급별 \ 기관별</th> <th>총계</th> <th>시의회 사무처</th> <th>분청 (직속기 관포함)</th> <th>교육지원 청</th> <th>공립의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총계</b></td> <td><b>3,276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정무직 소계</b></td> <td><b>1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일반직 소계</b></td> <td><b>3,085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3급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4급</td> <td>26</td> <td>1</td> <td>21</td> <td>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5급 이하</td> <td>3,04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전문경력관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연구직 소계</b></td> <td><b>2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연구사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별정직 소계</b></td> <td><b>2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5급상당 이하 소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특정직 소계</b></td> <td><b>186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일반직 4급 상당 이상   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 <td>27</td> <td></td> <td>18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일반직 5급 상당 이하   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   학사·교육연구사</td> <td>15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분청 (직속기 관포함)	교육지원 청	공립의 각급학교	<b>총계</b>	<b>3,276</b>					<b>정무직 소계</b>	<b>1</b>					교육감	1		1			<b>일반직 소계</b>	<b>3,085</b>					3급	7		7			4급	26	1	21	4		5급 이하	3,045					전문경력관	7					<b>연구직 소계</b>	<b>2</b>					연구사	2					<b>별정직 소계</b>	<b>2</b>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	<b>특정직 소계</b>	<b>186</b>		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 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분청 (직속기 관포함)	교육지원 청	공립의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총계</b>	<b>3,276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정무직 소계</b>	<b>1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일반직 소계</b>	<b>3,087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7	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6	1	21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	3,04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연구직 소계</b>	<b>2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특정직 소계</b>	<b>186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 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분청 (직속기 관포함)	교육지원 청	공립의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총계</b>	<b>3,276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정무직 소계</b>	<b>1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일반직 소계</b>	<b>3,085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7	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6	1	21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	3,0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연구직 소계</b>	<b>2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별정직 소계</b>	<b>2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특정직 소계</b>	<b>186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 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발췌사항

<p>관계법령 및 참고자료</p>	<p>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p> <p>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<u>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</u>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</li> <li>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</li> <li>3. 업무의 성질상 범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의 인력</li> </ol> <p>제16조(별정직 정원) ① 별정직 정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·상당 계급별로 책정하되,</u> 그 수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□ 지방공무원법</p> <p>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별정직공무원 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</u>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</li> </ol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